

의안번호	제2807호
의결 연월일	2024. 7. 25. (제295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	------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7. 1.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7호
----------	--------

제출연월일: 2024. 7. 1.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을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지질공원 인증 추진 관련 지원(안 제4조)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질공원해설사 육성·활용(안 제5조)

라. 고성공룡지질공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제7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마. 주민협의체 설치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나. 예산조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예정

-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과정 교육비 등 편성(31,600천 원)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4203(2024. 4. 3.)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659호
 - 가) 예고기간: 2024. 4. 11 . ~ 2024. 5. 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 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질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①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 양성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 과정을 준용하며,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주민협의체) 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교육비, 교통비, 활동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

- 교육비, 교통비, 활동비= 31,600천 원
 -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비 1,000천 원 × 4명 = 4,000천 원
 - 해설사 교통비 등 300천 원 × 4명 × 2회 = 2,400천 원
 - 해설사 활동비 등 70천 원 × 4명 × 90일 = 25,200천 원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